

공익신탁 계약서

(학교생활지원 공익신탁)

제1조 (신탁목적)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공익신탁 가입신청서에서 지정된 공익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명칭)

이 공익신탁의 명칭은 ‘학교생활지원 공익신탁’으로 한다.

제3조 (사 업)

이 공익신탁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기부금의 모집 및 집행
- ② 기부금 집행을 위한 신탁재산의 보관 및 운용
- ③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신탁재산)

- ① 신탁재산의 금액은 공익신탁 가입신청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재산을 추가로 신탁할 수 있다.
- ③ 수탁자는 추후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아 신탁원본에 포함할 수 있다.
- ④ 수탁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가 신탁 또는 기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종류, 총액 및 사용내역을 신탁관리인에게 보고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보고 및 신고 후 새로 누적된 추가 신탁 또는 기부의 총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월별로 보고 및 신고 할 수 있다.

제5조 (신탁재산의 운용)

-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 1. 국채, 지방채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사채의 응모·인수 또는 매입
 - 2. 국채나 그 밖에 제1호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
 - 3. 은행예금 또는 우체국예금
- ② 신탁재산은 공익신탁법 제11조에 따라 이 공익신탁이 정하는 공익사업 및

그 공익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추가로 신탁하는 금전과 운용상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도 위탁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제6조 (신탁기간)

이 공익신탁의 신탁기간은 이 공익신탁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이 공익신탁의 인가가 취소되거나 제20조 및 「공익신탁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공익신탁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7조 (신탁관리인)

- ① 이 공익신탁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신탁관리인을 정한다.
- ② 수탁자는 신탁관리인이 유고 또는 사임 등으로 그 직무를 계속 할 수 없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③ 신탁관리인은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직무 및 공익신탁법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한다.
- ④ 수탁자는 신탁관리인에게 제10조제1항의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보수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공익신탁 운영위원회)

- ① 이 공익신탁은 공익신탁의 운영, 기부 또는 이익을 제공받을 대상의 지정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익신탁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공익신탁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첨> 공익신탁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같이 정한다.

제9조 (사업연도)

이 공익신탁에서 공익신탁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는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마지막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날까지로 한다.

제10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공시)

- 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작

성하여 신탁관리인의 승인을 얻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공익신탁법 제17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인 경우), 신탁재산운용명세서, 신탁재산사용점검표, 공익사업세부명세서, 기부금품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신탁관리인의 승인을 얻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요청할 경우 수탁자는 관련서류를 제출한다.

제11조 (신탁재산의 사용)

- ① 수탁자는 제10조제1항의 사업계획서 범위 내에서 기부금품을 지급하거나 이익을 제공한다.
- ② 제8조에 따라 공익신탁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수탁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견 또는 권고에 따라 제1항의 기부 또는 이익을 제공받을 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지급하고 이익을 제공하는 사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④ 수탁자는 기부금품을 지급하거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인출 시에는 위탁자의 인출지시 없이 신탁관리인에게 보고하고 인출할 수 있다.

제12조 (제세공과금 및 사업비의 지출)

- ①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 ② 수탁자는 제10조제1항의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익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13조 (이익계산 및 신탁원본)

- ① 이 공익신탁의 이익은 기준가격방식에 의하여 산출하고, 신탁원본은 그 이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위탁자가 신탁원본이 아닌 그 이익만을 출연하는 경우, 해당 신탁원본은 ‘공익신탁 가입신청서’에서 정한 반환일 이후에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그 반환받을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 (기준가격의 계산)

- ① 계산시점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신탁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② 이 공익신탁의 좌수는 가입일을 기준으로 $[(\text{신탁재산의 가액} / \text{기준가격}) \times 1,000]$ 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 ③ 이 공익신탁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인가에 따라 최초로 설정되는 날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한다.

제15조 (신탁보수)

수탁자가 받는 신탁보수는 신탁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1000분의 5이며 매 사업연도 결산일에 신탁재산에서 차감한다.

제16조 (신탁재산 계산의 차입)

수탁자는 제3조에서 정한 사업을 집행하거나 또는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탁관리인의 승인 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동일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탁재산의 계산으로 수탁자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수 있다.

제17조 (수익권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

위탁자가 신탁원본이 아닌 그 이익만을 출연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 신탁원본에 대한 수익권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 (수탁자의 사임)

- ① 수탁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② 수탁자가 사임하는 경우, 신탁재산관리인 또는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과 신탁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제2항의 인계를 종료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제19조 (신탁조항의 변경)

-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시에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신탁조항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탁관리인의 승인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신탁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변경을 하기 전에 위탁자에게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위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한 이의

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위탁자가 제2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위탁자의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0조 (신탁의 종료 등)

- ① 이 공익신탁은 신탁재산을 모두 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위탁자가 추가 위탁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때에 종료한다.
- ② 이 공익신탁은 중도해지 할 수 없고, 당사자의 합의로 종료되지 않는다.
- ③ 이 공익신탁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탁관리인 및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 계산을 한 후 신탁관리인의 승인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잔여재산의 귀속)

공익신탁 인가가 취소되거나 공익신탁이 종료한 경우 남은 신탁재산은 공익신탁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 (신탁사무처리장소)

이 공익신탁의 사무는 수탁자의 본점 및 신탁부 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 (효력 발생일)

이 계약은 공익신탁법 제5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익신탁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4조 (계약내용의 보충)

함께 첨부한 ‘공익신탁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이 계약의 일부를 이루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익신탁 가입신청서’에서 정한다.

<별 첨>

공익신탁 운영위원회의 설치

공익신탁계약서 제8조에 따라 공익신탁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아래 내용에 따른다.

제1조 (운영위원회 설치)

-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 (이하 “운영위원” 이라고 한다)은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며, 수탁자가 신탁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이 공익신탁의 사업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에 학식 경험을 가진 자들로 위촉한다.
- ② 운영위원회에 위원장은 1인을 두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역할)

- ① 운영위원회는 이 공익신탁에서 정한 사업과 관련한 기부금 수혜대상자, 기부액 및 기부방법의 결정 등 공익신탁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의견을 전달 또는 권고를 한다.
- ② 전항에 규정한 것 이외 운영위원회는 수탁자의 자문에 응하고 이 공익신탁의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제3조 (운영위원의 임기)

-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이 공익신탁 기간 범위 내에서 5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② 운영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하는 경우 또는 해임된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관리인의 동의를 얻어 신속하게 선임을 하여야 한다.
- ③ 운영위원은 재임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은 사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위원의 해임)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으로서의 불성실한 행위가 있는 때 또는 심신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영위원의 3분의 2 동의를 얻는 동시

에 신탁관리인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가 해임을 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의 개최)

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수탁자로부터 운영위원회의 회의 목적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개최 청구가 있는 경우

제6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제5조제2호의 경우에는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의 의결)

-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의사는 이 신탁계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로 정한다.
- ③ 위원장은 신속한 의결이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소집을 하지 않고 결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결의를 요청할 수 있고, 서면결의를 요청받은 운영위원은 서면으로 그 찬·반을 표시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서면결의를 하는 경우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의 의사록)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일시 및 장소
2. 운영위원회의 재적 수
3. 운영위원회 참석한 운영위원 수 및 성명
4. 의결 사항
5. 의사의 결과 개요 및 그 결과

제9조 (운영위원의 보수)

운영위원에 대한 보수는 무보수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운영위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공익신탁 가입신청서

1. 공익신탁 명칭 : 학교생활지원 공익신탁

2. 공익사업 지정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보장, 학교생활유지 및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제반 비용 지원 사업

3. 원본 출연 여부

☐ 신탁원본 출연 (√), ☐ 신탁원본 출연하지 않음 ()

4. 신탁재산 (기부금액) : ₩ (원)

5. 위 내용 외에 나머지 사항은 <첨부> '공익신탁계약서'에 따른다.

6.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

위탁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을 위해 수탁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탁자는 위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부동의에 따라 연말정산소득공제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 목적 : 「소득세법」제160조의 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 개인정보 보유기간 :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및 범위 : 국세청에 위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액을 제공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공익신탁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자 주 소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기명식 증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위탁자의 위 신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